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대안)에서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함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4일로 확대함(안 제76조 제1항제3호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세 진)